###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36 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이원택·홍성국·김병주

주철현 · 최혜영 · 김남국

장철민 · 임호선 · 정청래

임오경 · 장경태 · 김민철

오영환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7조제 2항, 제9조제2항, 제17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##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감안"을 "고려"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감안"을 "고려"로 한다.

제17조제4항 전단 중 "입회"를 "참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	제7조(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
지급) ① (생 략)	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	②
따른 소규모농가(거주, 생계,	
농업경영 등을 <u>감안</u> 하여 대통	<u>고려</u>
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	
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대상	
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	
지불금(이하 "소농직접지불금"	
이라 한다)과 그 밖의 농업인	
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	
금으로 구분한다.	
제9조(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	제9조(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
자) ① (생 략)	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	②
중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	
기본법」 제3조제5호의 농촌	
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	
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	
지등의 면적, 연간 농산물 판매	
금액 등을 <u>감안</u> 하여 대통령령	<u>고려</u>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	
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	

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.

#### ③ (생략)

제17조(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) ① ~ ③ (생 략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조사・수거 또는 장 부나 서류의 열람(이하 "조사 등"이라 한다)을 하는 관계 공 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,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(그 대표자, 대리인, 피 용자, 이행보조자, 가족 등 관 계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와 제18조에서 같다)가 조사등 현 장에 입회하는 경우 이를 제시 하여야 한다. 제14조제2항에 따 른 등록신청 사항에 관한 사실 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등에 있 어서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 청을 한 자를 이 조 및 제18조 에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본다.

⑤ (생략)

③ (현행과 같음)
제17조(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
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)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4
<u>참관</u>
⑤ (현행과 같음)